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관** **이 기 권**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 · 제4항 및 제6항을”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제26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청석면”을 “백석면, 청석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 · 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 · 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 · 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제4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제4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소매업

별표 3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나.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p>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p>	<p>1명 이상</p>	<p>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	--------------	--

별표 10 비교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frac{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유해·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frac{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주) C_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_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조. 법 제38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일반석 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p>	<p>법 제72조제5 항제4호의3</p>	<p>철거 또는 해 체 공사 금액 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 당 금액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만원으로, 해 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에는 100만원 으로 한다.</p>	<p>200</p>	<p>300</p>
---	-------------------------------------	--	------------	------------

초. 법 제38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기관석 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 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 택(다중주택, 다가구주 택, 공관은 제외)	철거 또는 해 체 공사 금액 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 당 금액이 5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만원으로, 해 당금액이 500 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 로 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 체 공사 금액 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 당 금액이 15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 만원으로, 해 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500만 원으로 한다.	3,000	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민안전처
장 관**

박 인 용

●대통령령 제2698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5항제2호”로 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하는 기관